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조지연·박충권·김종양

박준대 · 김은혜 · 박덕흠

엄태영 • 백종헌 • 김석기

고동진 • 박성민 • 강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첨단산업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효과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일반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산업 및 기술을

보호·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 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 다.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은 정부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정부 외의 자의 출 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
- 라.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은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사업,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인력 등 양성 및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첨단 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를 둠(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 력강화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따라 산업통상자워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 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 이라 한다)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 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출연금
-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4.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6. 기금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에 사용한다.
 - 1.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 2. 특화단지 조성 · 운영 및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사업
 - 3.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4. 전문인력 등 양성 및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 5.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6.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7.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8.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하다)를 둔다.
 -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 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 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